

2011. 5. 20.(금)
(제300회 임시회)

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□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옥입니다.

- 2011년 5월 2일 임헌경의원외 6명이 발의하여 5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

- 충청북도의회 기존 정례회의 회의일수의 부족으로 의안심의시 촉박함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집회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개정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

- 제2차 정례회 회의 일수를 늘려 행정사무감사, 예산안심의, 추경예산안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1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.

-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활동을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판단되며, 정례회 일정을 앞당겨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